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133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유한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4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2. 4. 21. 접수 제588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국식

별지